

**중소기업 고유업종 88개중 43개 해제
골판지제조업 예시 1년후, 내년 9.1 발효
중기사업영역보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964호 : 2000. 9. 6)을 개정 공포 함으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88개중 43개 업종을 1년간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01. 9. 1일부로 해제 된다.

해제대상 43개 업종에 21211 골판지 제조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골판지제조업은 1979년에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 보호육성된 이래, 23년만에 해제된 것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중 존속 및 해제 업종

분 야	업 종	해 제 일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금속공업분야	○ 쇠못 제조업	2001. 9. 1	27123
			28941
	○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 알루미늄 제조업		27212
	○ 아연말 제조업		27213
	○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 (350톤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27212
			27213
	○ 고압가스용기 (50 l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28122
	○ 스텐레스용접강관 (장식용 구조용에 한한다) 제조업		27132
	○ 동모세관 (외경 4mm ϕ 이하의 것에 한한다)		27221
	○ 도금업 (자가공정에 의한 반도체소자 · 리드프레임 · 강판 · 강관 · 철강선 · 자동차제동장치 · 인쇄회로기판 및 CHIP 형 전자부품도금을 제외한다)		28922
정밀화학공업 분 야	○ 생석회 (생산능력 20만톤 이상의 자가소비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26312
	○ 탄산가스 (액화탄산 · 고형탄산에 한하되, 자가소비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24121
	○ 아연화제조업		24132
기계공업분야	○ 곡물건조기 제조업	2001. 9. 1	29310
	○ 상업용저울 (가정용저울을 포함한다) 제조업		29191

분 야	업 종	해 제 일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기계공업분야	○ 오일크리너(오일클래리파이어를 포함한다) 제조업		29175
	○ 벽시계 제조업	2001. 9. 1	33401
	○ 탁상시계 제조업	2001. 9. 1	33401
	○ 길이계(자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3212
	○ 안경테 제조업		33310
	○ 안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를 제외한다) 제조업		33321
	○ 자동소화기 제조업	2001. 9. 1	29194
	○ 피난기구 제조업	2001. 9. 1	28112
	○ 축압기 제조업		29122/29123
조선공업분야	○ 선박용문(조선용 기자재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5114
	○ 소형프로펠러(조선용 기자재용으로 직경 4천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5114
	○ 박용전선(조선용 기자재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5114
전자공업분야	○ 어학실습기 제조업	2001. 9. 1	32300
	○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	2001. 9. 1	31303
	○ 안테나 제조업		32300
	○ 트랜스포머(AC/AC 승압 및 강압용으로 권선된 상태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1103
	○ 플러그 및 잭(3극수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1201
	○ 철심코아(전자기기용 변성기용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2199
	○ 리드와이어 제조업		32199
	○ 컷아웃스위치(25KV급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1201
전기공업분야	○ 고장구간 제동개폐기(25.8KV, 400A, 15KV급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31201
	○ 면거즈 제조업	2001. 9. 1	17209
섬유공업분야	○ 세폭직물 제조업		17991
	○ 면이불솜 제조업	2001. 9. 1	17999
	○ 타올 제조업		17209
	○ 양말 편조업(스타킹류를 제외한다)		17322
	○ 장갑 편조업		17329
	○ 자수제품(전자자수제품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17912
	○ 우산 제조업		36992
잡화공업분야	○ 우산 제조업		36992

분 야	업 종	해 제 일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잡화공업분야	○ 양산 제조업		36992
	○ 신변모조장신품(의복장식) 제조업	2001. 9. 1	36971
	○ 노트 제조업		21291
	○ 일기책 제조업	2001. 9. 1	21291
	○ 앨범 제조업	2001. 9. 1	21291
	○ 유아용승용물 제조업		36942
			36999
	○ 봉제완구 제조업	2001. 9. 1	36941
	○ 지우개 제조업	2001. 9. 1	36960
	○ 거울판 제조업 - 거울판(거울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26122 26122
	2001. 9. 1	36960	
화학제품공업 분 야	○ 골판지상자 제조업		21211
	○ 습강지(위생용 나프킨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21292
	○ 광택제 제조업		24334
	○ 골판지 제조업	2001. 9. 1	21211
	○ 재생타이어 제조업		25112
	○ 고무장갑 제조업		25192
	○ 플라스틱용기(폴리에스틸용기 및 상자, 자가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150ml 이하의 드링크 요쿠르트 용기를 제외한다) 제조업		25232
	○ 폴리스티렌 페이퍼슈트 제조업		25291
	○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2001. 9. 1	21212
	○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2001. 9. 1	25291
		37200	
요업제품 및 건설자재분야	○ 연마지석 제조업		26991
	○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한다) 제조업	2001. 9. 1	26192
	○ 화장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한다) 제조업	2001. 9. 1	26192
	○ 연마지 및 포 제조업	2001. 9. 1	26991
	○ 아스콘(이동식 간이설비를 제외한다) 제조업		26921
농산물가공 분 야	○ 옥수수기름 제조업		15142
			15143

분 야	업 종	해 제 일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농산물가공 분 야	○ 동물약품(원료 및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신물질의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제조업		24223
	- 동물약품(자체개발한 원료를 이용한 동물용 의약품에 한한다) 제조업	2001. 9. 1	24223
	○ 서류전분(감자전분을 제외한다) 제조업	2001. 9. 1	15321
	○ 양곡도정업		15311
식품의료분야	○ 국수 제조업		15440
	○ 당면 제조업	2001. 9. 1	15440
	○ 두부 제조업		15494
	○ 봉합침 제조업	2001. 9. 1	33199
	○ 보청기 제조업	2001. 9. 1	33192
	○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온수기) 제조업	2001. 9. 1	31999
	○ 자기치료기 제조업		33199
	○ 어육연제품(맛살류를 제외한다) 제조업	2001. 9. 1	15121/15122
	○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 제조업		15122
○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2001. 9. 1	33199	
에너지·자원 관 련 분 야	○ 석건재 제조업	2001. 9. 1	26911
	○ 석공예 제조업	2001. 9. 1	26911
	○ 전기절연유(1종 광유계에 한한다) 제조업		23221
	○ 기타 비윤활유(프로세스유) 제조업		23221
수 산 분 야	○ 수산물냉동냉장(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및 허가를 이미 받은 자를 제외한다) 제조업		15123
기 타	○ 음반 및 녹음테이프(녹음 또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제조업	2001. 9. 1	22300

비 고 : 1. 위 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위 표의 중소기업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상의 범위중 위 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

3. 위 표의 해제일은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이 해제되는 날을 말함.